



## 拒 審決取消事件

〈日本東京高法 1980年(行ケ) 第322號, 1981年 1月 29日 判決〉

1. 原告: 美펜윌트 코퍼레이션

2. 被告: 日本特許廳長官

### 3. 判決主文

特許廳이 1980年 6月 10日, 同廳 1969年 審判第3422號 事件에 대한 審判을 取消한다.

訴訟費用은 被告의 負擔으로 한다.

### 4. 事件概要

原告의 前身인 윌레스 앤드 타이어너인코퍼레이티드가 1964年 12월 12일에 1963年 12월 13일자 美國에 의 特許出願에 의거 優先權을 主張하면서 名稱을 “갑쇄화法”이라고 한 發明을 特許出願하였던바 1928年 12월 5일자로 拒絶査定되었다.

이에따라 원고는 1969年 5월 16일 심판을 請求하였으나 1980年 6월 10일, 本件審判의 청구는 成立되지 않았다고 審決되어 그 謄本이 1980年 6월 28일에 原告代理人에게 送達되었다. 이때 원고를 위한 出訴期間으로 3個月이 附加되었다.

當初의 特許出願인 윌레스 앤드 타이어너인코퍼레이티드는 1975年 11월 13일자로 合併에 따른 名義變更申請에 의해 펜윌트 코퍼레이션으로 名의가 변경되었다.

### 5. 判決要旨

1975年 11월 22일자 的 拒絶理由 通知書는 1975年 12월 16일에 發送된 것이며 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意見書의 提出期間은 在外者인 원

고를 위하여 이 發送日로부터 3個月로 定하였다. 그러므로 이 拒絶理由에 대한 의견서 的 提出期間의 末日은 1976年 3월 16일이야 하나 원고는 1976年 3월 15일에 期間延長願書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기간은 1個月 延長된 까닭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的 제출기간의 말일은 1976年 4월 16일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審決에서 認定한 바와같이 1976年 4월 15일에 同日字의 節次補正書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節次補正書는 1975年 11월 22일자 거절이유통지서에서 原審이 指定하고 또 適法으로 연장된 의견서 的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였음이 明白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절차보정은 보정이 가능한 기간이 經過한 후에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採用할수 없다고 한 補正却下決定은 잘못이며 이 違法한 補正却下決定을 前提로 이 절차보정후의 本願明細書記載에 대하여 審理하지 않고 이 절차보정이 되기전 本願明細書記載에 의거한 記載不備를 이유로 本件審判의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은 위법인 탓으로 取消돼야 한다.

被告도 請求原因事實을 모두 인정하므로 청구원인사실은 모두 當事者間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在外者인 원고가 1976年 3월 15일에 기간연장원서를 제출하여 1개월

의 기간연장을 청구한 것일뿐더러 1975年 11월 22일자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的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므로 이 의견서 的 제출기간의 말일은 1976年 4월 16일이 된다.

이에따라 特許出願人인 원고는 出願公告된다는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는 다음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라 하여 이 의견서 的 제출기간의 말일인 1976年 4월 16일 까지는 거절이유에 가리킨 事項에 대하여 願書를 添附한 明細書 또는 圖面을 보정할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1976年 4월 15일에 제출한 명세서의 기재를 보정하기 위한 절차보정서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했다고 할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절차보정은 보정을 할수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절차를 밟은 것이타하여 보정후의 명세서기재를 審理하지 않고 오로지 補正前의 本願明細書記載에 만 의거 명세서의 기재가 不備하다고 判斷한 審決은 違法이므로 取消를 申할수가 없다.

따라서 심결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本訴請求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認容하고 訴訟費用의 負擔에 대하여는 行政事件訴訟法第7條, 民事訴訟法第89條를 適用하여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